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800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황건수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21. 4. 7.

판결 선고 2021. 4. 2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8가단517791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 2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2. 3. 15.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만기일 2012. 9. 15., 대출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3%등으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할 당시 D의 사내이사로서 위 대여금채무를 한도 3,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D는 2012. 7. 14.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2. 9. 15.위 대여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3) A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A과 원고는 2013. 9. 10.부터 2017. 1. 4.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담보 부동산 처분 및 연대보증인들의 일부변제 등을 통하여 총 2,450,429,262원을 상환받았고, 결국 이 사건 대여금은 2018. 8. 20. 기준 원금 49,570,738원(= 2,500,000,000원 - 2,450,429,262원), 이자 2,180,321,153원(= 원금이자 2,179,895,342원 + 이자연체료425,811원), 합계 2,229,891,891원이 남게 되었다.

나. 피고의 아파트 매수 등

1)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6. 1. 20. F와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9.까지 F에게 합계 49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C은 2016. 1. 29. F에게 50,000,000원(매매대금 540,000,000원 - 피고 지급금액 49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부터 현재까지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송금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인 C은 피고에게 위 송금을 통해 50,000,000원을 증여하였고, 그러한 증여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송금의 원인인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이 사건 송금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두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송금이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는지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은 C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급여 형태로 지급받은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은 2016. 1. 28. K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이고, 위 돈은 피고의 K에 대한 채무금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이 사건 송금은 원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 대표이사 R이 C에게 50,000,000원을 2016.1. 28.에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4. 29.에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K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하여도, C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50,000,000원의 적극재산이자 책임재산을 얻게 된 것이고(동시에 C은 K에 대한 50,000,000원의 반환채무라는 소극재산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처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K이 C에게 위 돈을 지급한 명목이 급여인지, 차용금인지와 무관하게 C은 피고에게 책임재산을 지급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C이 K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C의 K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채무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송금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피고가 K에 대한 공동채주로서 50,000,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K으로부터 직접 차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C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이 C에게 대여한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C과 더불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임이 인정되고, 그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 대한 C의 증여인지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은 C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이 1 2009. 3. 11.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L아파트 M호의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이 모두 C의 N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사용되고, 2 2014. 7. 23.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고 소유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져 매각대금 중 75,000,000원이 C의 O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C에 대하여 위1과 2에 따른 대위변제금 합계 305,000,000원(= 230,000,000원 + 75,000,000원) 상당의 변제자대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송금은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본지에 따라 50,000,000원의 일부변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6,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이 사건 송금은 피고에 대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C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송금은 피고와 F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며, 이후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위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② 부부 사이인 피고와 C 중 주로 경제활동을 하여 온 것은 C이고, 피고는 C에 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과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던 아파트 매매대금을 조성한 방법에 관하여, 어머니 T로부터 2006. 11. 24.부터 2007. 8. 16.까지 합계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통장 내역 외에는 달리 다른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는 2012. 9. 15.부터 2017. 7. 31.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을 제외하고서도 합계 472,89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피고는, C은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지만

하였으므로 C의 피고의 계좌에 대한 모든 송금을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인정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해의사

C이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그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1)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그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피고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인 이 사건 송금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최규연, 판사 최태영